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12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민원처리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안 제2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19일인데 비해 부천시는 24일로 한 근거나 이 휴가 무엇인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근거로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게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 현행 조례가 본인 결혼시 7일이고 개정안도 7일인데 주5일 근무제일 때와 주6일 근무제일 때와는 개념이 다른데 7일로 할 필요가 있는지?	○ 행자부 표준안이 7일로 되어 있고 공무원 특별휴가는 토, 일요일도 휴가일수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7일로 하였습니다.
○ 조례상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법이나 공무원법에 시간외 근무는 관리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므로 명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 공무원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중식시간을 1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원실 뿐 아니라 타부서도 적용되는지, 이렇게 하면 중식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운영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p> <p>○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와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직협에서 특별휴가나 중식시간 운영과 관련 별도로 건의한 내용은 없었는지?</p>	<p>○ 민원실 뿐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중식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되 민원실 같은 경우 직원 1/2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직협과도 사전 논의가 있었으며 특별휴가나 중식시간 운영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61호
의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제출년월일 : 2005.11.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나. 민원처리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안 제23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p>	<p>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p> <p>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p>

<p>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u>공휴일</u>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 -----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 ----- -----.</p>
<p>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삭 제></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생략) <신 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p>

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⑤ (생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삭 제></p>
<p>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히가를 얻을 수 있다.</p>	<p><삭 제></p>
<p>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삭 제></p>
<p>⑩ (생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p>